

AIDS 예방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홍 태 숙 / 대한병원협회 기획실장, 14대 국회의원 보좌관



입법부가 보건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첫째가 법률안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이고
둘째는 상임위원회 질의 및 대정부 질문을 통해,
셋째는 민원인의 청원을 소개하여
새로운 제도를 창출할 수 있다.

삼권분립이 되어있음에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일에 대한 기대를 입법부보다는 행정부에 기대하는 경향이 적지않다.

그도 그럴 것이 제헌국회 이후 지난 14대 국회 전반기까지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현황을 보면 제출된 법률 6천4백61건중 정부제출이 3천5백98건이었던 것에 비해 의원발의가 2천8백63건으로 정부의 법률 제출 실적을 훨씬 밀돌았고 가결율도 정부발의가 의원발의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날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영국도 2차대전 이후에 의회에 제출된 법안의 평균 85% 이상이 정부입법이며 대통령이 법률안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도 약 50%가 행정부의 입안 내지 협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서 14대 국회의 경우만 보면 총 24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안되어 총 10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중 순수의원 입법은 법안제정이 1건, 전면개정이 1건, 부분개정이 1건이었으며 나머지 7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필자는 지난 14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의료 관계 법률을 비롯하여 모두 10여개 법률의 제·개정작업에 참여, 그중 대부분이 본회의에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불합리한 제도나 법률을 국회의 입법과정 등 여러 절차를 통해 반영될 수 있음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입법부가 보건정책의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 세가지로 대별(大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첫째가 법률안의 제정(制定)과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발의할 수 있으며 그 둘째가 상임위원회 질의 및 대정부질문을 통한 보건건의료 제도의 개선, 그리고 그 셋째가 민원인의 청원을 소개하여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도록 물꼬를 돌려 놓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의 개선방법을 택하느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을 통한 정책의 제시방법을 통해 보건정책의 개선을 이끌

**정부가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을 취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법적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민간단체가
에이즈홍보를 안심하고 할 수 없다.**

어내는 방법을 택하느냐, 민원인의 청원 또는 진정을 받아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택하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결정되는데 경우에 따라 세가지 방법중 두가지 이상을 병행 진행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정부가 정책 개선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그 외의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관련 법의 개정, 또는 민원인의 청원을 소개하는 형식을 빌어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 개정법률안의 발의 동기

1995년 12월 정기국회를 10여일 앞두고 의원에게 대한에이즈예방 협회로부터 원고청탁이 들어 왔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입혈장관리문제와 관련, 혈액을 통

한 에이즈감염 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책을 일관성 있게 촉구해 온 터라 원고 작성을 위해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살펴보다가 현행법이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점을 두가지 발견하게 되었다. 그 첫째가 수입혈장의 국내 확인검사 체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모처럼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촉구하여 수입혈장의 국내 확인검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 흐지부지 될 우려가 있어 수입혈장의 정도관리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점과 이미 정부가 에이즈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을 취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법적장치가 되어 있지않아 민간단체가 에이즈홍보와 교육을 안심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였다.

당시 필자의 소속의원이었던 중앙의원도 에이즈예방정책에 도움이 되는 일이 법개정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곧바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법사위원회 권수철 과장

(현 법제처 법제기획과장)에게 들고 가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정리를 하고 바로 정부 여당합동회의인 당정회의와 법률안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제안설명서 작성에 들어갔다.

또한 효과적인 법 통과를 위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박상천 의원과 여당 간사였던 송두호의원을 공동발의의원으로 하여 국회법에 따라 발의의원을 포함하여 20명의 연명을 받아 초고속으로 법률안 상정과 본회의 통과라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다.

참고로 당시 작성하여 개정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 전문을 소개함으로써 이 개정법률안 제안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요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AIDS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 그 예방과 홍보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안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지난 1987년 제정되어 88년 한차례 개정되었으나 혈액으로 인한 감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으로부터 혈액을 원료한 혈장수입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혈액제제를 수입한 이후 국내 확인검사체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 기왕에 정부가 이 법 시행후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국내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와 아울러 이미 정부가 금년부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업무를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비용부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입법 당시 누락되었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수입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있어서 당해 수출국의 중병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내 확인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효과적인 교육과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업무를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따른 비용부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 개정법률안을 가절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5. 12. 14

국회의원 주 양 자
송 두 호
박 상 천